

제434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6 호

국회사무처

2026년4월18일(토) 오전 0시 20분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29)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30)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28)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29) 1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30) 1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1
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28) 1
- 의사진행발언 11

(00시24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29)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30)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28)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송기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송기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송기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지역구 광역의원 총정수를 현재 729명에서 25명 증원한 754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는 현재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 모두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광역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종전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 간 의석 규모 차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 광주광역시 지역 4개 선거구에 한하여 3인 이상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범실시 지역 11곳과 추가 선정 지역 16곳 등 총 27곳에서 최대 5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구성 다양성과 득표율 대비 의석 비율의 비례성 강화를 위하여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지역적 특수성이 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삭제하되 예비후보자는 그 대상에서 포함하도록 하고 후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공연한 비하·모욕 금지사유에 장애를 포함하였습니다.

여섯째,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서면신고 의무 대상을 정당 및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제삼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정당의 당내 선거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제출기한을 앞당겼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주시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2026년 6월 30일을 기하여 사라지는 교육의원 의석을 흡수함으로써 제주시도의회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관련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당원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사무소를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소 현황 등에 관한 중앙당의 정기보고 시한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와 같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기존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송기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춘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4일 정개특위 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에 들러리를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섭단체 중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참여한 만큼 개혁진보 4당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이끈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이 정개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치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의회의 양당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 지금 시기 정치개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오늘 처리되는 공직선거법이 결과적으로 양당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을 반대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선인 비율은 94.3%, 광역의회는 98.1%, 그야말로 거대 양당의 독식이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8.81%의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87.23%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63%의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95.74%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는 489명에 달합니다. 양천구의회 기초의원 16명 중 14명이 무투표 당선되었고 송파구는 23명 중 13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선출 권력이 지역의 예산과 정책을 주무르며 지방자치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개혁해야 할 정개특위는 사실상 허수아비였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철저히 배제됐고 법적 정당성이 없는 거대 양당만의 2 플러스 2 회동에서 모든 것이 밀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정개특위가 열린 그 순간까지도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양당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고 법안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었고 내용 공유도 없었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동지 맞습니까? 집권 여당이 됐으니 소수 정당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까? 필리버스터 종료할 때만 필요한 존재입니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비례대표 비율 최소 20%로 상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대표성을 보장하고 주민주권 지방정부 시대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물론 중대선거구 도입한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유권자의 평가가 더해지면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 호남에서의 민주당 1당 지배, 영남에서의 국민의힘 1당 지배를 극복하고 시민의 얼굴을 한 지방의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일부만 확대하는 것에 그칩니다.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하는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하는 법안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막대한 권한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4개 선거구만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빛의 혁명으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 동지 여러분!

윤석열의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뛰었던 연대의 정신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이 광화문과 안국동, 남태령과 한남동을 가득 메웠던 응원봉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끝으로 임미애 의원님 잘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든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정춘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매년 선거 1~2년 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그리고 진보정당들 모두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선거제도 제발 이번만큼은 미리미리 논의해서 고치자, 선거 직전에 가서야 지금처럼 중앙선관위가 ‘이때까지 안 하면, 지금 안 고치면 선거 못 치릅니다’라고 해야지만 논의하는 시늉만 하다가 적당히 끝내는 것 말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자라고 수없이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응원봉으로 군사 쿠데타 막아 내고 정권도 교체하고 치르는 첫 번째 선거에서 내란정당을 정치적으로 온전히 끌어내리고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하는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마저 그 행태가 반복되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국회본회의 의결을 앞둔 오늘, 아니 채 30분 전까지 민주당 의원 160명과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뺀 5200만 국민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인 제가 아무리 동료 의원님들과 국회사무처에 안을 달라고 해도 모두가 묵묵부답입니다. 솔직히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그 법안들 읽고 검토하고 들어오신 의원님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향후 지방자치 4년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개정안 꼼꼼히 검토할 시간이 국민의 대표자인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보장된 것이 맞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12시 차수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급하게 의결했기 때문에, 알고 보니 의결한 내용에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랑 달라서 수정해야 하는데 시스템상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것 아닙니까? 급박하게 밀실에서, 숙의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날치기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무회의마져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주권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내란정당과 선거제도를 야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껏 내란정당과 맞서 싸우던 그 결기는 어디 가고 내란정당과 밀실 합의했으니 이게 끝이다 하는 겁니까? 내란정당이 발목 잡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변명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의원님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담대하게 늘리고 대표성과 다양성 확대하자 그것이 21대 국회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공론 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최근 3% 미만인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그 당연한 원칙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는 오늘도 그것을 논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 내란정당은 정치개혁에 한결같이 반대해 왔습니다. 저 또한 군사 쿠데타마저 옹호하는 정당에게, 지금도 윤석열이 무죄라고 항변하고 있는 정당에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부터 민주주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14%는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 합의안입니까? 원칙도 근거도 모르겠는 숫자를 들고 조금 나아졌으니 우리 만족하자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사표 최소화를 정치의 원칙으로 삼고 시민사회와 민주 진보진영의 정당들이 함께 토론해서 현재 제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제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으로 정치개혁을 크게 시작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회의원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지방선거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방선거 봉쇄조항 5% 위헌판결 나면 그때서야 바꾸실 겁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책임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사무소 하나 더 설치하게 해 주는 것, 결국 국회의원선거구 기준으로 지구당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에 무슨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래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지방선거 선거제도와 함께 이 시점에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늘 폭로되는 지역구에서 봉건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시군구도 아니고 왜 국회의원선거구마다 해야 합니까? 충분히 논의되지도, 점검되지도 않은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요구했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그리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개혁이 되지도 않았고 과정도 비민주적이었고 개정안의 내용 또한 비민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기본소득당은 반대한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원식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하는 의원 있음)

(○한창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누구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까, 일찌감치 끝났어야 될 일인데?)

인사하고 올라오세요.

○한창민 의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란 이후 지방정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법안임에도 정치개혁특위 구성부터 오늘 본회의 상정까지 모든 과정이 졸속과 깜깜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또한 정치개혁특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논의 과정을 되짚어 보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며 광장의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4당과 간절히 외쳤지만, 공개적이고 책임 있게 논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현실은 양당 비공개 회동의 반복이었습니다. 개혁을 외쳤던 그 누구도 양당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졸속, 밀실야합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며 정부정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되는지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밀실에서 담합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낡은 정치를 깨고 개혁을 선도해야 할 국회가 정작 자신의 문제에는 외면하고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지방정치, 지방의회의 현실이 어떤지 정말 모르십니까? 민생의 최전선에 있

는 지방정치가 영남은 빨간색, 호남은 파란색 일색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데 유독 정치만 두 가지 색깔을 강요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지역은 소수 기득권의 놀이터가 되어서 부패·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투표 당선이 500여 명에 이르는 낡은 정치 속에서 지방은 무능하고 낡은 정치에 사로잡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어디에도 서민과 청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공간 있습니까? 현실은 이런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을 보십시오. 국민의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 이거 확장하고 민주적이고 전면적인 개헌안 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범지역 확대라는 외피를 썼지만 구체적 내용은 현상 유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확대로 지역정치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올렸습니까? 이 정도면 국민 눈속임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특별하게 얘기 않겠습니다.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에 어떻게 임했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36년 전 지방자치 전면 도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단식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이 찾아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요? 바로 의회정치와 지자체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평생 지역주의에 맞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두 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절한 외침을 잊으셨습니까?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은 정치 앞에서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개혁에 앞장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개혁이라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몽니를 부리고 발목을 잡더라도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동지와의 신뢰를 중히 여겼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오늘 같은 이런 담합 법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또 다른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낡은 기득권에 연연하고 내 밥그릇만은 꼭 챙기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시라면 국민을 위한 신뢰와 연대의 정치를 보여 주십시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한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오늘 정치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세력 완전 청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회 대개혁, 지난 겨울부터 광장에서 뜨겁게 외친 구호들입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 낸 후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부터 기득권 카르텔 정치를 끝내고 땀 흘려 일하는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 광장의 열망에 비해 오늘의 결과물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의 연장입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정치 구조를 바꾸어야 주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2인 선거구제라는 낡은 울타리를 허물지 못했고, 비례대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도 14%에서 멈추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만 살아남는 지방의회, 내란세력의 정치 생명 연장,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낡은 정치를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전남이 통합되면서 단체장에게만 쏠린 권한을 견제하고 통합시부터라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빛의 혁명 이후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인 정치개혁, 이번 지방선거 앞에서도 양당 합의를 이유로 지체되었고 심지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소수 정당은 배제되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폭력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들만의 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다시는 내란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정치 구조를 바꾸어야 할 책무, 우리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민주주의는 정치개혁 없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양당 중심 정치 구조로는 언제든지 윤석열과 같은 내란 정치세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선택지를 넓히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개혁을 시대적 사명이라 여기며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선 선배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물은 양당이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양당 합의는 안 될 것이 뻔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빛의 혁명과 함께 만든 집권 여당, 민주당 의원님들께 책임을 다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 실현, 진짜 민주주의, 진짜 대한민국, 내란당 국민의 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외친 구호 아닙니까?

지방선거 이후 즉시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선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진행되는 양당 밀실 합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역사적 과제입니다. 시대적·역사적 책무 앞에 우리 의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추운 겨울 광장에 섰던 그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본 의원부터 추운 겨울 광장에 섰던 그 마음을 오롯이 새기겠습니다. 광장에서 함께 섰던 민주진보 5당이 함께 정치개혁을 반드시 완수합시다. 진보당은 땀 흘려 일하는 주권자 시민의 뜻이 구현되는 정치개혁,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오세요.

○오기형 의원 죄송합니다. 저도 이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지 좀 유감이고 협상하시는 분들이 워낙 날 새기를 하면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례 자체는 좀 서로가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봉구 구의원 숫자에 대한 것입니다. 본래 도봉구는 갑과 을이 있고요. 갑의 지역구는 3인 선거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구의원 수가 6명인 거지요. 그다음에 을 쪽에는 2인 선거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인 겁니다. 비례는 포함해서, 따로 2명이 있고요.

갑과 을에 대해서 합쳐서 12명의 지역구의원들이 있는데 그 구의원 수를 오늘 바꿨습니다. 갑을 7명으로, 을을 6명 그대로 고정을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 수는 을이 갑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2인 선거구제도가 적절하냐에 대해서 논쟁도 있고 저희는 협상팀에게 을에 대해서 3:3으로 해도, 바뀌어도 좋다, 왜냐하면 갑과 을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요즘 논의의 추세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봉을 2:2:2 선거구를 갑처럼 3:3 선거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봉갑 3:3 선거구를 2:4 선거구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묻히고 다시 3:3 선거구를 3:4 선거구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개정안 내용이 한 선거구를 플러스 1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선거구나 중선거구에서 대선선거구로 바꿀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 시스템에서 하나를 왜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구가 도봉갑이 많고 충분히 비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는 을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합의를 해 가지고 플러스 1이 들어간 이 상황을 저는 도봉구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것 계속 회자될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장을 했고 누가 로비를 했는지 묻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협상을 하신 분들, 이 주장을 하신 분들 죽 있지만, 고생하셨지만 이 결과를 일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의장 우원식 오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3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2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다음에 서미화 의원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진행발언

(01시00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입니다.

낮은 시간이지만 딱 5분만 발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 마흔일곱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 장애계의 요구가 시작된 지 20여 년,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후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장애계의 숙원 법안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끝내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보건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260만 장애인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이전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본회의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게 해 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사이 장애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으로서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더 이상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로 세우는 법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법에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무를 분명히 하고 흩어져 있던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제정법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가야 할 자립 권리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담고 있는 기본법입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OECD 경제수준 세계 10위권이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는 국제기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9월 세상에 드러난 인천 색동원 사건은 2005년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보다 훨씬 잔인하고 피해자가 많은 심각한 사건으로 보도되면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기간 반복된 학대와 성폭력 그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또 다른 시설로 내몰리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지 않습니까?

색동원 사건은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 보호의 대상으로만 치부해 버린 비장애 중심의 복지제도가 낳은 구조적 참사,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바로 장애인권리보장법입니다.

이 법은 시설을 없애자는 법이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책임 있게 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탈시설은 강요가 아닌 선택권의 확대이며 권리 보장의 확장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오히려 장애인에게 그 어떤 선택권도 없이 시설에서 평생토록 살 수밖에 없게 한 구조가 색동원 사건과 같은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을 반복되게 한 더 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고 그 주간은 장애인 주간입니다. 4월 23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상정되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은 물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으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서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꼭 통과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역할이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로써의 정치의 역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방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아니면 발의된 법안 중에 정말 사회적약자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치열하게 준비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그렇고 세월호 가족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를 겪은 가족들이 다 함께 이야기하는 생명안전기본법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의 단결권·교섭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 단결권·교섭권을 만들어 내는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정말 치열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저도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지방선거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나가자는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0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13인)****찬성 의원(184인)**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맹성규	모경중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갑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범수	서영교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손명수	송기현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여기구	염태영	염태영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종근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준석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은석	최혁진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4인)

김미애	서천호	이소영	최형두
-----	-----	-----	-----

기권 의원(25인)

김기현	김민전	김은혜	김희정	노종면	민형배	박선원	박성훈	박정훈	복기왕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오기형	우원식	윤상현	이주희
이춘석	장철민	최보윤	추미애	허성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15인)****찬성 의원(214인)**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종균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윤상현

(강득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198인)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맹성규	모경종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서명옥	서범수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종균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준석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반대 의원(1인)

이주희

기권 의원(14인)

김영배 남인순 노종면 박덕흠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지영 이소영 이춘석
임미애 장경태 조계원 조지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2인)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광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엄태영 오기형 우원식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종균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근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희 이성운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기권 의원(2인)

성일종 이소영

○출석 의원(238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광상언 구자근 권칠승
권향엽 김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연옥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36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종균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산회 시 재석 의원(73인)

고민정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준혁	김준환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모경중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우원식	윤종균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용선	이용우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혁진	추미애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출장 의원(5인)

박상혁 오세희 조은희 조인철 한지아

○청가 의원(31인)

강선우	고동진	김민석	김병기	김상욱	김성원	김성환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박수현	박홍근	신동욱	안규백	안호영	위성곤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성권
이원택	이인영	이주영	이철규	전재수	정동영	정성호	조정식	조정훈	진종오
천하람									

○국회 참석자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김승묵

○출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보고사항】

○의안 제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9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손술 의원·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4)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7)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 4. 1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3)

한국발전공사법안

(2026. 4. 17.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026. 4. 17.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6)

이상 3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4. 18.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8430)

○의안 심사**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4)

(수정하여 의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5.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1.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2.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3.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6.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임미애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9.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1)

(이상 3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7건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보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후보자(고광현) 인사청문요청안

(2026. 3. 18.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4월 14일 정부에 송부

국회소속기관부석

[illegible]

국무위원보좌석

Diagram illustrating the layout of a city, showing various districts and landmarks. The diagram is divided into several colored regions (yellow, orange, green, blue, red) representing different administrative areas. The layout includes numerous small rectangular blocks, some of which are labeled with text in Korean. A legend at the bottom right identifies the colors: yellow for 'Dongnam-gu', orange for 'Dongnam-gu', green for 'Dongnam-gu', blue for 'Dongnam-gu', and red for 'Dongnam-gu'. A scale bar at the bottom left indicates distances in meters (0, 100, 200).